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2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 강훈식·조 국·허 영

문진석 • 윤준병 • 박희승

김한규 · 김성회 · 이훈기

정준호 · 강준현 · 신영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인수·합병의 방식은 지배주주와의 수의계약으로 경영권 지분을 매수하는 형태의 주식인수형(share acquisition)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동일한 가격의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인수·합병 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주식인수형 거래의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영국, 독일,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는 인수기업이 인수·합병을 위해일정 비율 이상의 피인수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잔여지분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중임.

이에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33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매수등(이하 "선행매수"라 한다)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행매수 이후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서 기보유 주식등의 수를 공제한 잔여주식 전부에 대하여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33조제4항에 따른 공개매수가격은 선행매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제145조 중 "제133조제3항"을 "제133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445조제19호 중 "제133조제3항"을 "제133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매수등(이하
	"선행매수"라 한다)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
	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u>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경우</u>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
	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
	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행매수 이후 해당 회사의 발
	행주식 총수에서 기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공제한 잔여주식 전
	부에 대하여 공개매수를 하여
	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② (생 략)

<신 설>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33조 제3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 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 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 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

역심해 가능성 등을 끄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⑤</u> 제3항 및 제4항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33조제4항에 따른 공개	
매수가격은 선행매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u>제133조</u>	
<u>제3항·제4항</u>	

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 할 수 있다.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45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18의4. (생 략) 1. ~ 18의4. (현행과 같음)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 19. 제133조제3항 • 제4항 -----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 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 을 한 자 20. ~ 48. (생략) 20. ~ 48. (현행과 같음)